

선 람	기 관 의 장

제605호 2021. 5. 25.(화)

**조 려**

제2748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규 칙**

제1308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6

제1309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

제1310호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8

**훈 령**

제522호 홍천군 중계대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 20

**고 시**

제2021-204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정정) 고시 ..... 24

**공 고**

제2021-949호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28

제2021-952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35

제2021-954호 개발행위허가 및 기준공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37

제2021-955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39

제2021-959호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1

제2021-965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 51

제2021-983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52

제2021-984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54

제2021-98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8

제2021-988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5

제2021-990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9

제2021-991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4

제2021-996호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0  
 제2021-997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4  
 제2021-100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88  
 제2021-1006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93  
 제2021-1007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95  
 제2021-100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97  
 제2021-1013호 개발행위허가 및 기준공지에 대한 도로의 지정·공고 ..... 99  
 제2021-103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01

회람									
----	--	--	--	--	--	--	--	--	--

발행 : 홍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전화 : 033-432-7801, FAX:033-430-2019)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5월 25일

홍천군조례 제2748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12명이며"를 "841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00명"을 "829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812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800명</u></p> <p>2. (생 략)</p> <p><b>[별표 3]</b></p> <p style="text-align: center;"><b>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6">기관별</th> <th colspan="6">변 경</th> </tr> <tr> <th>총계</th> <th>본청</th> <th>의 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 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812</td> <td colspan="6">812</td> <td colspan="6"></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6">1</td> <td colspan="6"></td> </tr> <tr> <td>시장(군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6"></td> </tr> <tr> <td>일반직 계</td> <td>769</td> <td colspan="6">769</td> <td colspan="6"></td> </tr> <tr> <td>2급</td> <td></td> <td colspan="6"></td> <td colspan="6"></td> </tr> <tr> <td>3급</td> <td></td> <td colspan="6"></td> <td colspan="6"></td> </tr> <tr> <td>4급</td> <td>3</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6"></td> </tr> <tr> <td>5급</td> <td>32</td> <td>17</td> <td>2</td> <td>2</td> <td>1</td> <td>10</td> <td colspan="6"></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732</td> <td colspan="6">732</td> <td colspan="6"></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2</td> <td colspan="6">2</td> <td colspan="6"></td> </tr> <tr> <td>연구직 계</td> <td>5</td> <td colspan="6">5</td> <td colspan="6"></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 colspan="6"></td> <td colspan="6"></td> </tr> <tr> <td>지도직 계</td> <td>37</td> <td colspan="6">37</td> <td colspan="6"></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d colspan="6"></td> </tr> <tr> <td>지도사</td> <td>34</td> <td colspan="6">34</td> <td colspan="6"></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변 경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 계	812	812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769	769												2급														3급														4급	3	3											5급	32	17	2	2	1	10							6급 이하 계	732	732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5	5												연구사														지도직 계	37	37												지도관	3			3									지도사	34	34												<p>제2조(정원의 총수) ----- ----- <u>841명</u>이며-----.</p> <p>1. ----- <u>829명</u></p> <p>2. (현행과 같음)</p> <p><b>[별표 3] &lt;개정 2021. 7. 1.&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6">기관별</th> <th colspan="6">변 경</th> </tr> <tr> <th>총계</th> <th>본청</th> <th>의 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 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841</td> <td colspan="6">841</td> <td colspan="6"></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6">1</td> <td colspan="6"></td> </tr> <tr> <td>시장(군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6"></td> </tr> <tr> <td>일반직 계</td> <td>795</td> <td colspan="6">795</td> <td colspan="6"></td> </tr> <tr> <td>2급</td> <td></td> <td colspan="6"></td> <td colspan="6"></td> </tr> <tr> <td>3급</td> <td></td> <td colspan="6"></td> <td colspan="6"></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d colspan="6"></td> </tr> <tr> <td>5급</td> <td>32</td> <td>17</td> <td>3</td> <td>2</td> <td>1</td> <td>10</td> <td colspan="6"></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757</td> <td colspan="6">757</td> <td colspan="6"></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2</td> <td colspan="6">2</td> <td colspan="6"></td> </tr> <tr> <td>연구직 계</td> <td>5</td> <td colspan="6">5</td> <td colspan="6"></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 colspan="6"></td> <td colspan="6"></td> </tr> <tr> <td>지도직 계</td> <td>40</td> <td colspan="6">40</td> <td colspan="6"></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d colspan="6"></td> </tr> <tr> <td>지도사</td> <td>37</td> <td colspan="6">37</td> <td colspan="6"></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변 경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 계	841	841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795	795												2급														3급														4급	4	3		1									5급	32	17	3	2	1	10							6급 이하 계	757	757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5	5												연구사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직급별		기관별						변 경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 계	812	812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769	769																																																																																																																																																																																																																																																																																																																																																																																																																																																																													
2급																																																																																																																																																																																																																																																																																																																																																																																																																																																																															
3급																																																																																																																																																																																																																																																																																																																																																																																																																																																																															
4급	3	3																																																																																																																																																																																																																																																																																																																																																																																																																																																																													
5급	32	17	2	2	1	10																																																																																																																																																																																																																																																																																																																																																																																																																																																																									
6급 이하 계	732	732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5	5																																																																																																																																																																																																																																																																																																																																																																																																																																																																													
연구사																																																																																																																																																																																																																																																																																																																																																																																																																																																																															
지도직 계	37	37																																																																																																																																																																																																																																																																																																																																																																																																																																																																													
지도관	3			3																																																																																																																																																																																																																																																																																																																																																																																																																																																																											
지도사	34	34																																																																																																																																																																																																																																																																																																																																																																																																																																																																													
직급별	기관별						변 경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 계	841	841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795	795																																																																																																																																																																																																																																																																																																																																																																																																																																																																													
2급																																																																																																																																																																																																																																																																																																																																																																																																																																																																															
3급																																																																																																																																																																																																																																																																																																																																																																																																																																																																															
4급	4	3		1																																																																																																																																																																																																																																																																																																																																																																																																																																																																											
5급	32	17	3	2	1	10																																																																																																																																																																																																																																																																																																																																																																																																																																																																									
6급 이하 계	757	757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5	5																																																																																																																																																																																																																																																																																																																																																																																																																																																																													
연구사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별표 3] <개정 2021. 7. 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변 경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b>총 계</b>	<b><u>841</u></b>	<b><u>841</u></b>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b>일반직 계</b>	<b><u>795</u></b>	<b><u>795</u></b>				
2급						
3급						
4급	<u>4</u>	3		<u>1</u>		
5급	32	17	3	2	1	10
<b>6급 이하 계</b>	<b><u>757</u></b>	<b><u>757</u></b>				
전문경력관 계	2	2				
<b>연구직 계</b>	<b>5</b>	<b>5</b>				
연구관						
<b>연구사</b>	<b>5</b>	<b>5</b>				
<b>지도직 계</b>	<b><u>40</u></b>	<b><u>40</u></b>				
지도관	3			3		
<b>지도사</b>	<b><u>37</u></b>	<b><u>37</u></b>				

2021. 5. 25.(화)

홍 천 군 보

제605호

**규칙**

홍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5월 25일

홍천군규칙 제1308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7.1.>

### 홍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841	467	12	140	35	33	15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5	460	12	99	35	33	154	
	4급	소 계	4	3		1				
		서 기 관	2	2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4~5급	소 계								
		행정·기술4·행정5								
		기술4·보건·간호·의무5								
	5급	소 계	32	17	2	2	1	1	9	
		행 정	7	7						
		의 무								
		행정·사복	2	2						
		행정·농업	2	2						
		행정·복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	3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복·농업·복지	2							2
		행정·사복·농업·시설	6					1	5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복지·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환경·복지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전문	1				1				
	일반직 6급	소 계	172	103	2	13	8	6	40	
행 정		26(3)	21	2				3(3)		
세 무		2	2							
농 업		3	3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일반직	6급	의료기술	1			1				
		간 호	1			1				
		보건진료	6			6				
		환 경	2	2						
		시 설	14	12			2			
		녹 지	1	1						
		행정·세무	5	5						
		행정·전산	1	1						
		행정·사복	10	9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20	5				1	14	
		행정·녹지	6	6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15	14				1		
		농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2	1			1			
		시설·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5						1	4
		행정·세무보건	1	1						
		행정·세무시설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9						1	8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서·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농업·환경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사북·농업·환경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운 전	4	4							
	전기운영·기계운영·시설관리	1					1			
일반직	7급	소 계	203	132	3	28	10	9	21	
		행 정	51	44	3		1	1	2	
		세 무	6	6						
		전 산	3	3						
		사회복지	13	8				1		4
		공 업	2				2			
		농 업	7	7						
		녹 지	5	5						
		보 건	9	1		8				
		의료기술	3			3				
		간 호	5			5				
		보건진료	6			6				
		환 경	2	2						
		시 설	27	21				1	1	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5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4	1					3	10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9	8				1		
		전산·방송통신	1	1						
		수의·해양수산	3	3						
		보건·식품위생	2	1		1				
		보건·간호	2			2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환경·시설·공업	1					1				
전기운영	1					1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일반직	8급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운 전	7	5		2			
		소 계	234	134	3	43	6	9	39
		행 정	50	37	1				12
		세 무	8	8					
		전 산	4	4					
		사회복지	18	8				1	9
		공 업	7	6		1			
		농 업	3	2		1			
		녹 지	2	2					
		보 건	2	1		1			
		의료기술	7			7			
		간 호	22			22			
		보건진료	7			7			
		환 경	6	4			2		
		시 설	18	14			1		3
		방송통신	1	1					
		방재안전	2	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3	3				3	7
		행정·녹지	4	4					
		행정·환경	6	4				2	
		행정·시설	15	14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서	2	2					
	전산·시설	1	1						
	농업·수익	1	1						
	농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	4	1		3				
	농업·녹지·시설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3	1					2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운 전	13	5	1	1		1	5
일반직	9급	소 계	148	71	2	12	10	8	45
		행 정	36	16				2	18
		세 무	1	1					
		전 산	1	1					
		사회복지	17	2				4	11
		공 업							
		농 업	5	5					
		녹 지	5	5					
		보 건	5	1		4			
		환 경	4	4					
		시 설	9	7					2
		방송통신	1	1					
		의료기술	4			4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서	5	5					
		행정·공업	3	1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환경	4	2					2
		행정·시설	4	3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보건	1			1			
		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2	1				1	
		공업·환경	1	1					
		행정·세무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6					3	3
기계운영	5			1	1		1	2	
열관리운영	1							1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총 계	본 청							
		사무운영		2	2					
		방 호								
		운 전		10	1	1	2	1	1	4
		시설관리		3	1			2		
전 문 경력관	나군	계		2	1		1			
		영 사		1	1					
		농기계교관		1			1			
연구직	학예 연구	계		5	5					
		소 계		3	3					
		연구관								
	기록 연구	연구사		3	3					
		소 계		1	1					
		연구관								
	녹지 연구	연구사		1	1					
		소 계		1	1					
		연구관								
지도직	합계	계		40			40			
		지도관		3			3			
	농촌 지도	지도사		37			37			
		소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 비고: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이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홍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5월 25일

홍천군규칙 제1309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을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6장 읍·면”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2절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를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삽입한다.

제11조의2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5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5장 사업소”를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를 삽입한다.

제15조 앞에 “제2절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를 삽입한다.

2021. 5. 25.(화)

홍 천 군 보

제605호

제17조 앞에 "제6장 읍·면"을 삽입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u>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u>으로 보한다.</p> <p>②·③ (생 략)</p> <p>&lt;신 설&gt;</p>	<p>제7조(소장의 직급) ① ----- <u>개방형직 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하부조직) ① <u>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u></p> <p>② <u>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8조 (생 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제2절 농업기술센터</u></p> <p style="padding-left: 80px;">&lt;신 설&gt;</p>	<p>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40px;"><u>제2절 농업기술센터</u></p>
<p>제9조 ~ 제11조의2 (생 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제5장 사업소</u></p> <p style="padding-left: 40px;"><u>제1절 상하수도사업소</u></p> <p style="padding-left: 80px;">&lt;신 설&gt;</p> <p style="padding-left: 80px;">&lt;신 설&gt;</p>	<p>제10조 ~ 제12조의2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의2까지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4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40px;"><u>제5장 사업소</u></p> <p style="padding-left: 40px;"><u>제1절 상하수도사업소</u></p>
<p>제12조·제13조 (생 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제2절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u></p> <p style="padding-left: 80px;">&lt;신 설&gt;</p>	<p>제13조·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40px;"><u>제2절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u></p>

제14조 · 제15조 (생 략)

제6장 읍 · 면

<신 설>

제16조 · 제17조 (생 략)

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  
음)

<삭 제>

제6장 읍 · 면

제17조 · 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  
음)

[별표 5] <개정 2021. 7. 1.>

**보건소 분장사무(제8조 관련)**

업무분장	분 장 사 무 내 역
<p>보건정책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업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사항</li> <li>3. 공중보건 의사 인사 및 복무지도 감독</li> <li>4.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li> <li>5. 방역사업에 관한 사항</li> <li>6. 전염병의 예방관리</li> <li>7.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에 관한 사항</li> <li>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li> <li>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li> <li>10.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li> <li>11. 질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2. 감염병 감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li> <li>13. 그 밖에 보건, 진료,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사항</li> </ol>
<p>건강증진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li> <li>2.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li> <li>3. 구강 보건에 관한 사항</li> <li>4. 모자 보건에 관한 사항</li> <li>5.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li> <li>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통합건강증진에 관한 사항</li> <li>8. 지역주민 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li> <li>9.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건강증진, 정신건강, 방문보건, 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li> </ol>

홍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5월 25일

홍천군규칙 제1310호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5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한다.

별표2의 지급기준란의 급식비 "7,000원 이내"를 "8,000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홍천군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u>5명 이내</u>로 한다.</p> <p>[별표2]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180 750 762 1153"> <thead> <tr> <th>지 급 대 상</th> <th>지 급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봉사자로 1일 4시간 이상 활동한 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u>7,000원</u> 이내/1인당</li> <li>○ 교통비 : 5,000원 이내/1인당</li> <li>○ 활동용품비 : 실 구입가격</li> </ul> </td> </tr> </tbody> </table>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봉사자로 1일 4시간 이상 활동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u>7,000원</u> 이내/1인당</li> <li>○ 교통비 : 5,000원 이내/1인당</li> <li>○ 활동용품비 : 실 구입가격</li> </ul>	<p>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① ----- ----- <u>6명 이내</u>로 한다.</p> <p>[별표2]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820 750 1402 1153"> <thead> <tr> <th>지 급 대 상</th> <th>지 급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 같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u>8,000원</u> 이내/1인당</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ul> </td> </tr> </tbody> </table>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u>8,000원</u> 이내/1인당</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ul>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봉사자로 1일 4시간 이상 활동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u>7,000원</u> 이내/1인당</li> <li>○ 교통비 : 5,000원 이내/1인당</li> <li>○ 활동용품비 : 실 구입가격</li> </ul>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u>8,000원</u> 이내/1인당</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ul>								

**훈령**

홍천군 중계대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5월 10일

홍천군 훈령 제522호

**홍천군 중계대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홍천군 중계대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개선 및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녹취정보의 부정사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취시스템"이란 중계대 및 행정전화에 의한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전수녹취시스템"이란 당사자에게 사전에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할 것을 공지한 후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중계대"란 전화 회로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선 전화에 접속하여 중계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녹취정보"란 녹취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5. "당사자"란 중계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녹취시스템의 녹취정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란 녹취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녹취시스템을 사용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사업소, 읍면, 의회, 직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장소)** 녹취시스템은 관리부서에 설치한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취시스템의 책임자 및 관리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녹취시스템 정책임자: 관리부서의 장
2. 녹취시스템 부책임자: 관리부서의 정보통신담당
3. 녹취시스템 관리자: 녹취시스템 업무 담당자

**제6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제3자가 채록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제7조(녹취시스템 사용자)** 녹취시스템의 사용자는 녹취기능이 가능한 중계대,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전수녹취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인허가, 단속, 복지 등 반복민원이 많은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직원 중 전화폭력 등의 빈도가 높은 경우
3. 그 밖에 사용부서의 장이 전수녹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비밀유지 의무)** 녹취시스템의 사용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취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취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녹취 시 사전고지)** 녹취시스템 사용자가 녹취를 할 때에는 반드시 통화상대자에게 녹취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녹취정보 관리)** ① 녹취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에 따라 90일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자동 삭제되도록 한다.

- ② 관리부서의 장은 녹취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녹취정보가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시스템에 저장된 녹취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녹취정보 열람·제공 및 절차)** ①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녹취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수사와 공소의 제기 등을 위해 문서로 요청 받은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해 문서로 요청 받은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녹취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수인계증을 제출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 ③ 녹취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녹취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스템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리부서의 장이 시스템 사용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녹취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누출시킨 사람
2. 녹취 시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사용한 사람
3.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부서의 장이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021. 5. 25.(화)

홍 천 군 보

제60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녹취정보 인수·인계증					
<b>1. 녹취정보 내용</b>					
				( )	
<b>2. 수령일자</b> : 20    년        월        일					
<b>3. 서약 사항</b> 본인(당 기관·단체)은 상기 녹취정보를 인수하는 경우 「홍천군 중계대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열람·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b>4. 녹취정보의 처리</b> 본 녹취정보는 신청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b>인 수 자</b>	부    서    명 (주        소)				
	직        급				
	성        명 (기관·단체명)	(서    명)			
<b>인 계 자</b>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고시**

홍천군 고시 제2021-204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정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홍 천 군 수

**1. 목 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하여 표시정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정정) 고시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정정) 대상**

○ 당초

연번	구 분	시 설 명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사업량		지정일자	비고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연장 (m)	폭 (m)		
1	소교량	풍천천 무명5교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1 (578-5지선)	400-1 (578-5지선)	14	5	홍천군 고시 제2018-382 (2018.7.30.)	

○ 변경(정정)

연번	구 분	시 설 명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사업량		지정일자	비고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연장 (m)	폭 (m)		
1	소교량	당무교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1 (446-10지선)	400-1 (446-10지선)	14	5	홍천군 고시 제2018-382 (2018.7.30.)	

**3.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정정)일 : 2021. 5. 13.**

**5. 문 의 처 : 강원도 홍천군 경제국 건설방재과(033-430-2891)**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1-949호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홍 천 군 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예고기간: 2021. 5. 11. ~ 2021. 5. 31. (20일)**

**2.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이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예외로 함에 따라 택시운수사업자들이 사업구역 제한이 완화된 고급형(대형)택시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 사업질서 문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리군 사업구역 내 적용할 고급형(대형)택시로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기준 및 요건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군수의 인가를 요하는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의 대상 및 요건(안 제2조, 별표)

**4.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홍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전화: (033) 430 - 2977, FAX: (033) 430 - 2929, E-mail: bong91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규칙 제 호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 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2조제2항 관련)

- 1. 개인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 가. 대상자 : 홍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나. 인가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2)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3) 개별 기본요건
      - ① 대형택시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② 경형·소형·중형택시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4) 면허전환 공고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 다. 인가 조건
    -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총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 2) 면허 전환을 받은 자가 직접 운전
    -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 2. 개인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 가. 대상자 : 홍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나. 인가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2)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3) 개별 기본요건
      - ① 모범택시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② 경형·소형·중형택시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4) 면허전환 공고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 다. 인가 조건
    - 1)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총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 2) 면허 전환을 받은 자가 직접 운전
    -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 2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 가. 대상자 : 홍천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나. 인가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2)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3) 결격사유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 1)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 2) 운전자는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
-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 개인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홍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2)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3) 개별 기본요건
  - ① 모범·대형택시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② 경형·소형·중형택시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4) 면허전환 공고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7의2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인가 조건

-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 2) 면허 전환을 받은 자가 직접 운전
-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홍천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2)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3) 결격사유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다. 인가 조건

-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 2) 운전자는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
-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4. 기타 사업별 면허 조건

가. 모범택시

1.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행요금은 강원도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3.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모범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기능이 가능 토록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요금미터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에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모범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모범택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7.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8. 모범택시의 양도에 관하여는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훈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9. 모범택시로 전환된 자는 농촌형교통모델사업(희망택시 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대형택시

1.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행요금은 강원도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3.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 자동차를 운행 하여야 합니다.
4. 대형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요금미터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에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대형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7.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8. 사업자는 관할관청의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대형택시로 전환된 자는 농촌형교통모델사업(희망택시 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고급택시

1.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행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3.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고급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요금미터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와 같은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단,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해당 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6.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7. 사업자는 관할관청의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고급택시로 전환된 자는 농촌형교통모델사업(희망택시 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1-952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홍 천 군 수

## 1.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변경) 사유
				기점	종점			포장 너비	도로 너비	
서석면	농어촌 도로	동두선	서석206호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62-3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62-9	150	-	7.5 (m)	7.0 (m)	편입토지 및 면적 변경

2. 사업기간 : 2021. 2. ~ 2022. 6.

3.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4. 자금계획 : 1,000백만원

5.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홍천군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

7. 설계도서 : 생략(홍천군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에 비치)

8. 편입토지조서 : 별첨

서석면 청량리(서석206호선) 선형개량공사 편입토지조서										
* 서석면 청량리(서석206호선) 선형개량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계						472,410	2,672			
1	서석면	청량리	산162-3		도로	5,474	150	홍*군		
2	서석면	청량리	산162	산162-7	임야	456,853	410	이*학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시정로 264	
3	서석면	청량리	산162-1	산162-8	도로	6,420	2,075	한*농*촌*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4	서석면	청량리	산162-2	산162-9	유지	3,663	37	한*농*촌*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홍천군 공고 제2021-954호

## 개발행위허가 및 기준공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기준공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 및 기준공지에 대한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675-4
3. 도로길이 : 43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16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모곡리	675-4	전	160	160	이*환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폐지 • 변경 후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구 적 표 (단 ㎡)					
지번	지목	지적	구분	신청면적	비고
67-5-4	전	180.0	①	180.0	진입도로 부지
총계		180.0		180.0	

폐지 • 변경 후 현황도

축척 [ ] 1/600 [ ] 1/1,200

홍천군 공고 제2021-955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홍 천 군 수

1.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m)	주요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사유
				기점	종점			포장너비	도로너비	
화촌면	농어촌도로	노내골	화촌204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산51-4번지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17-1번지	1,480	-	4.0(m)	4.0(m)	편입 토지 및 면적 변경

2.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3.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4. 자금계획 : 300백만원
5.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홍천군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
7. 설계도서 : 생략(홍천군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에 비치)
8. 편입토지조서 : 별첨

화촌면 내삼포리 노내골선(화촌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조서												
·화촌면 내삼포리 노내골선(화촌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7,753					
1	화촌면	내삼포리	산51	산51-4	임야	3,051,310	16	국(산*정)				
				산51-5			42					
				산51-6			6,535					
				산51-7			83					
				산51-8			657					
				산51-9			1,785					
				산51-10			2,423					
				산51-11			2,419					
2	화촌면	내삼포리	산51-1		구거	20,038	2,929	국(건*교*부)				
3	화촌면	내삼포리	21-1	21-3	답	1,577	544	임*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6길	윤*순	경기도 광명시 도덕 로28번안길 13	근저당권
4	화촌면	내삼포리	19-1		도로	152	96	국(농*축*식*부)				
5	화촌면	내삼포리	18	18-1	전	1,811	177	박*애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삼포노내길			
6	화촌면	내삼포리	17-1		도로	506	47	국(농*축*식*부)				

홍천군 공고 제2021-959호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홍 천 군 수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6.9.공포, ’20.6.10.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안 제4조)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변경(안 제9조)

□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산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및 문의처

2021. 5. 25.(화)

홍 천 군 보

제605호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산림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767, 팩스 033-430-2759, 이메일 hslsh11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FAX, 방문 등

붙임 1. 홍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홍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2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지역) 군수가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권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 및 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녹지경관의 조성) 군수는 관할 구역에 녹지공간(가로화단, 쌈지공원, 도로변 꽃길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주민 참여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 녹지경관조성 등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다.

1. 각종 안전사고 예방
2. 수목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도시숲등 및 녹지경관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9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숲등 관련사업의 계획 및 설계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는 동시에 해산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가로수의 조성·관리

제17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및 도시숲등 기본계획, 가로수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

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원인자는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63호, 2018.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담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p>△ 피 해 발 생 의 경 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b>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li> <li>○ <b>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b>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보호시설 재료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li> <li>○ <b>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b> ⇒ 실작업비</li> </ul>
<p>△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식하는 경우</b>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 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li> <li>○ <b>제거하는 경우</b>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제거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li> <li>○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li> <li>○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li> <li>○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가로수에 대한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li> </ul>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input type="checkbox"/> 심고 가꾸기 <input type="checkbox"/> 옮겨심기 <input type="checkbox"/> 제 거 <input type="checkbox"/>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명	규 격
	수 량	수 고 : 가슴높이 지름 : 근원지름 :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	일부터 일까지( 일간)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b>홍 천 군 수 귀 하</b>		
<b>붙임 서류</b>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 홍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 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 ] 심고 가꾸기  
 가로수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 인 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W )		
	납부기간					
<p>「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홍 천 군 수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 vertical-align: middle;"></span></p>						



홍천군 공고 제2021-965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홍천군 도해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지역측지계」에서「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홍 천 군 수**

- 1.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법률 제9774호, 2009.6.9.)
- 2. 목 적 : 지적과 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 3. 주요내용 :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
- 4. 대 상 : 2021. 5. 11. 기준, 관내 모든 필지의 지적·임야도(도해지역)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제외**
- 5. 시행일자 : 2021. 5. 12.
- 6. 문 의 : 홍천군 토지주택과 지적재조사담당(☎ 033-430-2161)

**【 참 고 】**

- ◆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상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로서 지적공부의 위치기준과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
  - (지역측지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측지계로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음
  - (세계측지계)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홍천군 공고 제2021-983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홍 천 군 수

- 1. 사업명 :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34-6 외 2필지
- 3. 도로길이 : 약 127m
- 4. 도로너비 : 약 5.0m
- 5. 도로면적 : 672㎡
-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남면 화전리	134-6	임	415	415	김*순 지*운 배*주 홍*민 홍*진 박*숙 홍*희 김*열	
	134-12	임	54	54		
	134	답	203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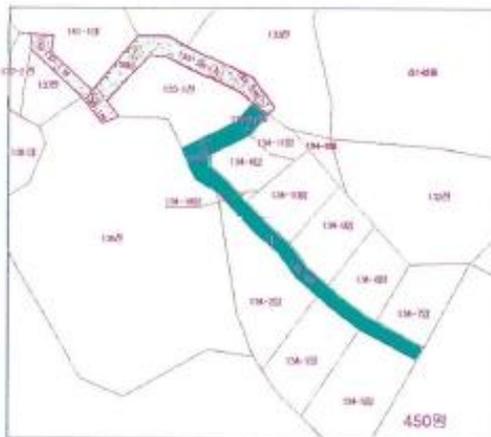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폐지 · 변경 후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상지현황)

구 적 표				(단 ㎡)	
지번	지목	지적	부호	신청면적	비고
134-8	답	415.0	①	415.0	
134-12	답	54.0	②	54.0	
총 계				469.0	

(농지현황)

구 적 표				(단 ㎡)	
지번	지목	지적	부호	신청면적	비고
133-2	전	83.0	①	83.0	
133-3	전	161.0	②	161.0	
134	답	203.0	③	203.0	
135-1	전	86.0	④	86.0	
136	밭	185.0	⑤	185.0	
137-1	전	123.0	⑥	123.0	
총 계				841.0	
총 계				1,270.0	1,270.0

폐지 · 변경 후 현황도

축척 [ ] 1/600 [ ] 1/1,200

홍천군 공고 제2021-984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군도4호선(서면 어유포리)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을 위해「도로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7.

**홍 천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 5. ~ 2022.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군도4호선 (서면 어유포리) 도로확포장공사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94-2번지 ~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211-3번지	도로확포장 L=1,160m, B=7.5(6.0)M	홍천군수/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 업 명	열 램 장 소	열 램 기 간
군도4호선 (서면 어유포리) 도로확포장공사	홍천군청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 (☎033-430-2857)	2021. 5. 17. ~ 2021. 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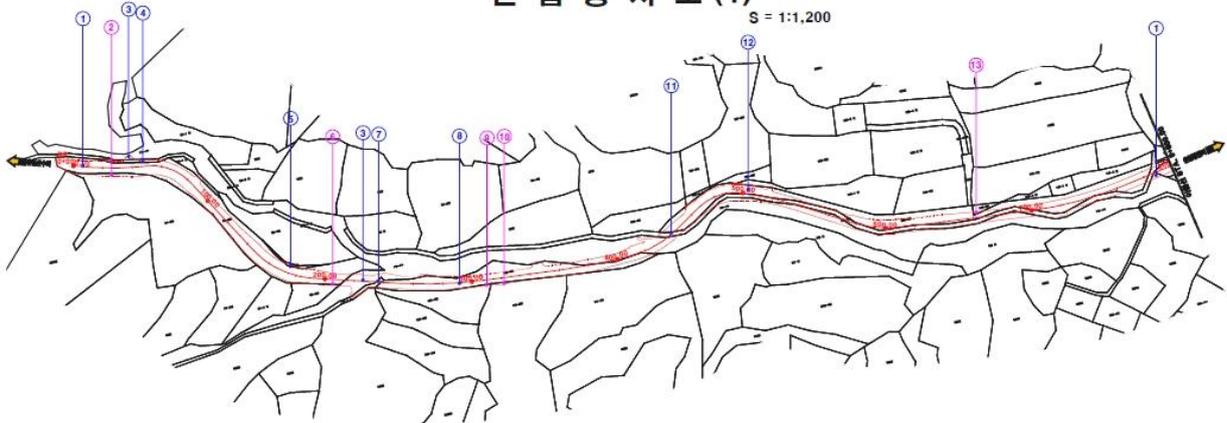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5. 17. ~ 2021. 5. 31.(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홍천군청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033-430-285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도4호선(서면 어유포리)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조서									
* 군도4호선(서면 어유포리)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편입예상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b>계</b>					<b>48,188</b>	<b>10,344</b>			
1	서면	어유포리	94-2	도로	2,727	2,004	홍*군		
2	서면	어유포리	94-3	전	4,522	79	최*현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3	서면	어유포리	119-1	구거	16,642	1,134	국(건*부)		
4	서면	어유포리	320-1	도로	260	48	국(농*축*식*부)		
5	서면	어유포리	95-2	도로	69	7	홍*군		
6	서면	어유포리	96-2	전	463	11	김*현	강원도 가평군 가평읍 쇠내골길	
7	서면	어유포리	323-1	도로	450	55	국(농*축*부)		
8	서면	어유포리	109-1	도로	1,590	1,200	홍*군		
9	서면	어유포리	109-4	전	1,084	11	최*현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10	서면	어유포리	110-2	전	6,493	27	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115-21	
11	서면	어유포리	211-1	도로	2,956	1,449	국(농*축*식*부)		
12	서면	어유포리	150-2	도로	2,889	1,747	홍*군		
13	서면	어유포리	146-2	도로	76	7	최*오 외 1인		
							최*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69	1/2지분
							최*오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1길 46	1/2지분
14	서면	어유포리	143-2	도로	50	5	홍*군		
15	서면	어유포리	142-1	도로	826	543	홍*군		
16	서면	어유포리	161-2	도로	459	311	홍*군		
17	서면	어유포리	141-1	전	241	191	강*도		
18	서면	어유포리	164-2	도로	1,580	1,039	홍*군		
19	서면	어유포리	175-2	전	1,299	11	전*철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68	
20	서면	어유포리	172-2	도로	429	337	홍*군		
21	서면	어유포리	172-4	전	1,283	7	최*훈 외 3인		
							최*봉	강원도 홍천군 서면 석화촌길	1/3지분
							최*식	강원도 춘천시 부안길6번길	1/3지분
							최*훈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70	1/3지분
22	서면	어유포리	172-3	대	141	36	최*훈 외 2인		
							최*봉	강원도 홍천군 서면 석화촌길	1/3지분
							최*식	강원도 춘천시 부안길6번길	1/3지분
							최*훈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70	1/3지분
23	서면	어유포리	174-4	도로	619	53	홍*군		
24	서면	어유포리	211-3	도로	1,040	32	국(농*축*식*부)		

편 입 용 지 도 (1)

S =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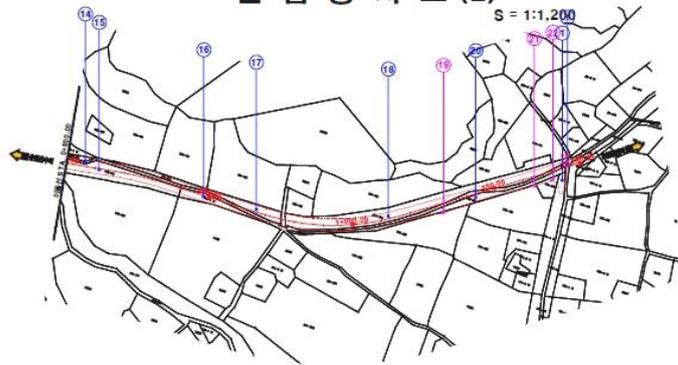


소재지	부호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면적면적	소유주	비고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1	94-2	도	2,727	2,004	홍천군	19300
	2	94-3	전	4,522	79	홍천군	19300
	3	119-1	구	16,642	1,134	국(농림축산식품부)	19300
	4	920-1	도	260	48	국(농림축산식품부)	19300
	5	95-2	도	69	7	홍천군	19300
	6	96-2	전	463	11	홍천군	19300
	7	223-1	도	450	55	국(농림축산식품부)	19300
	8	109-1	도	1,590	1,200	홍천군	19300
	9	109-4	전	1,084	11	홍천군	19300
	10	110-2	전	6,493	27	홍천군	19300
	11	211-1	도	2,956	1,449	국(농림축산식품부)	19300
	12	150-2	도	2,889	1,747	홍천군	19300
	13	146-2	도	76	7	홍천군	19300
소 계		13필		40,221	7,779		

면적산정은 Auto Cad에 의함.

편 입 용 지 도 (2)

S = 1:1,200



소재지	부호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면적면적	소유주	비고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14	143-2	도	50	5	홍천군	19300
	15	142-1	도	826	543	홍천군	19300
	16	161-2	도	459	311	홍천군	19300
	17	141-1	전	241	191	강원도	19300
	18	164-2	도	1,580	1,039	홍천군	19300
	19	175-2	전	1,299	11	홍천군	19300
	20	172-2	도	429	337	홍천군	19300
	21	172-4	전	1,283	7	홍천군	19300
	22	172-3	대	141	36	홍천군	19300
	23	174-4	도	619	53	홍천군	19300
	24	211-3	도	1,040	32	국(농림축산식품부)	19300
	소 계		11필		7,967	2,665	
합 계		24필		48,188	10,344		

면적산정은 Auto Cad에 의함.

**군도4호선(서면 어유포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업명	군도4호선(서면 어유포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장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홍천군 공고 제2021-98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홍 천 군 수

-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고기간 : 2021. 5. 14. ~ 5. 23. (10일)
- 3. 개정이유
  - 지역현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국책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홍천군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841명 ⇒ 844명 <증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829명 ⇒ 832명 <증 3명>
  - 나. 홍천군 정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4조, 별표 3)
    - 일반직 계: 795명 ⇒ 798명 <증 3명>
    - . 5급 계 : 32명(본청 17명) ⇒ 33명(본청 18명) <본청 증 1명>
    - . 6급이하 계 : 757명 ⇒ 759명 <증 2명>
    - ※ 한시기구 존속기한 3년 뒤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자동소멸
  - 다. 직급별 정원(한시정원) 증원현황(안 제5조)

구분	직렬	직급	인원	비고
<b>합계</b>			<b>3</b>	
국책사업 추진단장	행정	5급	1	
철도추진담당	행정	6급	1	
국책사업 추진 실무자	행정·시설	7급	1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홍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홍천군 조례 제 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41명이며"를 "844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29명"을 "832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급별 한시정원) 홍천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총수는 3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국책사업추진단의 정원 3명(본청 5급 1명, 6급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정중)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4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29명                      2. (생략)                      &lt;신설&gt;</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844명이며-----                      1. ----- 832명                      2. (현행과 같음)                      제5조(직급별 한시정원) 홍천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총수는 3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3] &lt;개정 2021. 7. 1.&gt;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 \ 기관별</th> <th colspan="6">변 경</th> </tr> <tr> <th>총계</th> <th>본청</th> <th>의 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841</td> <td colspan="5">841</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5">1</td> </tr> <tr> <td>시장(군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795</td> <td colspan="5">795</td> </tr> <tr> <td>2급</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3급</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2</td> <td>17</td> <td>3</td> <td>2</td> <td>1</td> <td>10</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757</td> <td colspan="5">757</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2</td> <td colspan="5">2</td> </tr> <tr> <td>연구직 계</td> <td>5</td> <td colspan="5">5</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지도직 계</td> <td>40</td> <td colspan="5">40</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37</td> <td colspan="5">37</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변 경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 계	841	841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795	795					2급							3급							4급	4	3		1			5급	32	17	3	2	1	10	6급 이하 계	757	757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5	5					연구사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 \ 기관별</th> <th colspan="6">변 경</th> </tr> <tr> <th>총계</th> <th>본청</th> <th>의 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843</td> <td colspan="5">844</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5">1</td> </tr> <tr> <td>시장(군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798</td> <td colspan="5">798</td> </tr> <tr> <td>2급</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3급</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3</td> <td>18</td> <td>3</td> <td>2</td> <td>1</td> <td>10</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759</td> <td colspan="5">759</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2</td> <td colspan="5">2</td> </tr> <tr> <td>연구직 계</td> <td>5</td> <td colspan="5">5</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지도직 계</td> <td>40</td> <td colspan="5">40</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37</td> <td colspan="5">37</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변 경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 계	843	844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798	798					2급							3급							4급	4	3		1			5급	33	18	3	2	1	10	6급 이하 계	759	759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5	5					연구사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직급별 \ 기관별		변 경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 계	841	841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795	795																																																																																																																																																																																																																																											
2급																																																																																																																																																																																																																																													
3급																																																																																																																																																																																																																																													
4급	4	3		1																																																																																																																																																																																																																																									
5급	32	17	3	2	1	10																																																																																																																																																																																																																																							
6급 이하 계	757	757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5	5																																																																																																																																																																																																																																											
연구사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직급별 \ 기관별	변 경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총 계	843	844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798	798																																																																																																																																																																																																																																											
2급																																																																																																																																																																																																																																													
3급																																																																																																																																																																																																																																													
4급	4	3		1																																																																																																																																																																																																																																									
5급	33	18	3	2	1	10																																																																																																																																																																																																																																							
6급 이하 계	759	759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5	5																																																																																																																																																																																																																																											
연구사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별표 3] <개정 2021. . .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변 경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844	844				
정무직계	1	1				
시장(군수)	1	1				
일반직 계	798	798				
2급						
3급						
4급	4	3		1		
5급	33	18	3	2	1	10
6급 이하 계	759	759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5	5				
연구관						
연구사	5	5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별표 4] <개정 2021. 7. 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제5조 관련)

구분	계	일반직					존속기한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3	1	1	1	-	-		
본청	3	1	1	1	-	-	2024.6.30	국책사업 추진

홍천군 공고 제2021-988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5. 14. ~ 5. 23. (10일)
3. 개정이유
  - 지역현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국책사업 추진단에 국책사업담당과 철도추진담당을 신설하고, 지역현안 국책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계 : 841명 ⇨ 844명 <증 3명>
  - 나. 일반직 계 : 795명 ⇨ 798명 <증 3명>
    - 국책사업 추진단: 행정·시설 5급 증 1명, 행정·시설 6급 증 1명, 행정 6급 증 1명, 행정 7급 증 1명, 행정·시설 7급 증 1명, 행정·시설·공업 8급 증 1명
    - 일자리경제과: 행정·시설 6급 감 1명, 행정 7급 감 1명, 행정·시설 8급 감 1명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개정사항 요약)

직종·직급별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현행	841	467	12	140	35	33	154
			변경	<b>844</b>	<b>470</b>	12	140	35	33	154
일반직	5급	소계	현행	32	17	2	2	1	1	9
			변경	<b>33</b>	<b>18</b>	2	2	1	1	9
		행정·시설 (3→4)	현행	3	3					
			변경	<b>4</b>	<b>4</b>					
	6급	소계	현행	172	103	2	13	8	6	40
			변경	<b>173</b>	<b>104</b>	2	13	8	6	40
행정 (26→27)		현행	26(3)	21	2				3(3)	

직종.직급별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 관	사업소	읍	면
일 반 직	7급	소계	변경	27(3)	22	2				3(3)
			현행	203	132	3	28	10	9	21
		행정·시설 (9→10)	현행	9	8			1		
			변경	10	9			1		
	8급	소계	현행	234	134	3	43	6	9	39
			변경	234	134	3	43	6	9	39
		행정·시설 (15→14)	현행	15	14			1		
			변경	14	13			1		
행정·시설·공업 (0→1)		현행	0	0						
		변경	1	1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2021. 5. 25.(화)

홍 천 군 보

제605호

홍천군 규칙 제 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국책사업추진단의 정원 3명(본청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홍천군 공고 제2021-990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5. 14. ~ 5. 23. (10일)
3. 개정이유
  -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양수발전소 건설,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등 지역현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전담 한시기구인 국책사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대규모 국책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단(한시기구) 신설
    - 국책사업 추진단 신설 : 2담당(국책사업담당, 철도추진담당)
    - 기구개편사항 총괄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증 감		비고
	기 구	담 당	기 구	담 당	기 구	담 당	
본 청	2국 1담당관 16과	96담당	2국 1담당관 16과 1추진단	97담당	1추진단 신설	1담당	증
의 회	1과	1담당	1과	1담당	-	-	
직속기관	2직속(4과)	19담당	2직속(4과)	19담당	-	-	
사 업 소	2사업소	6담당	2사업소	6담당	-		
읍 면	1읍 9면	45담당	1읍 9면	45담당	-	-	
정원	841명		844명		3명		증

※ 일자리경제과 양수발전지원담당 → 국책사업추진단 국책사업담당  
 나.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제4조)

기관명	현행	조정	비고
국책사업 추진단	신설	2담당 (국책사업담당, 철도추진담당)	

다. 국책사업 추진단(한시기구) 신설 관련 분장사무 조정(제6조,제7조)

구분	조정	분장사무내역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삭제	8. 양수발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
국책사업 추진단	신설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홍천군 조례 제 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국책사업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책사업추진단은 대규모 국책사업, 철도추진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양수발전지원”을 “에너지”로 한다.

제2장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한시기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국책사업추진단을 둔다.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제1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국책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u>기획감사담당관</u>을 둔다.</p> <p>② (생략)</p> <p>&lt;신설&gt;</p> <p>제6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략)</p> <p>② 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일자리창출 및 지원, 에너지,양수발전지원</u>에 관한 사항</p> <p>5. ~ 23. (생략)</p> <p>&lt;신설&gt;</p> <p><u>제14조의2</u> (생략)</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 <u>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책사업추진단은 대규모 국책사업, 철도추진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u></p> <p>제6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에너지</u>-----</p> <p>5. ~ 23. (현행과 같음)</p> <p><u>제7조 (한시기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국책사업추진단을 둔다.</u></p> <p><u>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u></p> <p><u>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u></p> <p><u>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u>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u></p> <p><u>5. 그 밖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u></p> <p><u>제14조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u></p>

홍천군 공고 제2021-991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5. 14. ~ 5. 23. (10일)

3. 개정이유

- 지역현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 전담 한시기구인 국책사업 추진단 구성에 따른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국책사업 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급 설정(안 제3조의2)

직위	현행	조정	비고
국책사업 추진단장	<신 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나. 국책사업 추진단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내역 조정(안 제4조, 별표3)

업무분장	구분	분장사무내역
일자리 경제과	삭제	8. 양수발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
국책사업 추진단	신설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 과 분장 사무: 별표 3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홍천군 규칙 제 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장·담당관·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으로, "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을 "담당관·과장·추진단장 등의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장 및 담당관"을 "국장,담당관,추진단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시기구) 한시기구인 국책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의 제목 "(담당관·과의 분장사무)"를 "(담당관·과·추진단의 분장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국책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u>」 제2조에 따라 <u>홍천군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u> 등의 직급과 <u>담당관·과장</u> 등의 <u>사무분장</u>, <u>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u>, <u>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u> 등 <u>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직무) ① <u>국장 및 담당관</u>은 <u>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4조(<u>담당관·과의 분장사무</u>) <u>담당관·과의 분장 사무는 별표 3과 같다.</u></p>	<p>제1조(목적) ----- ----- <u>국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u> ----- <u>담당관·과장·추진단장</u> 등의 <u>사무분장</u>----- -----.</p> <p>제2조(직무) ① <u>국장,담당관,추진단장</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u>한시기구</u>) <u>한시기구인 국책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4조(<u>담당관·과·추진단의 분장사무</u>) <u>담당관·과·추진단</u>-----.</p>

[별표 3] <개정 2021. 7. 1.>

**본청 담당관 과 분장사무(제4조 관련)**

업무분장	분 장 사 무 내 역
경 제 국	
일자리 경제과	1.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사항 2. 노동 및 노정에 관한사항 3.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에 관한사항 4. 중소기업에 관한사항 5.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 6. 첨단·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7.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경제, 기업, 첨단생명, 일자리, 에너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한시기구	
국책사업 추진단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홍천군 공고 제2021-996호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반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홍 천 군 수**

-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고기간: 2021. 5. 14. ~ 5. 23. (10일)
- 3. 개정이유
  - 반장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통신비)을 추가하여 사기진작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도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21.10.21. 시행예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 (안 제1조)  
(현행)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 (개정안)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6항
  - 조문별 용어 순화 및 오탈자 수정 등 자구수정 (안 제2조, 제3조, 제5조)
  - 통신비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3조4항)  
: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6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급근거 마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6 팩스 033)430-2259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원활한 말단 침투와”를 “원활한 추진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조정할”을 “조정할”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추천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
2.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자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6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p> <p>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여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2. (생 략)</p> <p>제5조(반장) ① (생 략)</p> <p>②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된다.</p> <p>1. 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6월 이상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의 자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전투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p> <p>&lt;신 설&gt;</p> <p>③ (생 략)</p> <p>제13조(실비 변상액등) ① ~ ③ (생 략)</p>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6항----- -----.</p> <p>제2조(하부조직) ----- 원활한추진과 ----- -----.</p> <p>제3조(구획기준) -----.</p> <p>1. ----- ----- ----- ----- 조정할 -----.</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반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p> <p>1.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추천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p> <p>2.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자</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실비 변상액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6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p>

홍천군 공고 제2021-997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5. 14. ~ 5. 23. (10일)**

**3. 개정이유**

- 홍천군 이장연합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홍천군 이장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지원 추가 (안 제5조제2항제7호)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6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이장협의회”를 “이장연합회 및 이장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 ① (생 략)</p> <p>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7. <u>이장협의회</u> 등 각종 회의</p> <p>8. 9. (생 략)</p>	<p>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이장연합회</u> 및 <u>이장협의회</u> ----- -----</p> <p>8. 9. (현행과 같음)</p>

홍천군 공고 제2021-100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도31호선(내면 자운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추진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8.

홍 천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 5. ~ 2022.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국도31호선(내면 자운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홍천군 내면 자운리 467-4번지 ~ 자운리 470-18번지	도로선형개량 L=250m	홍천군수/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 업 명	열 램 장 소	열 램 기 간
국도31호선(내면 자운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홍천군청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 (☎033-430-2857)	2021. 5. 18. ~ 2021. 6. 1.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5. 18. ~ 2021. 6. 1.(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홍천군청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033-430-28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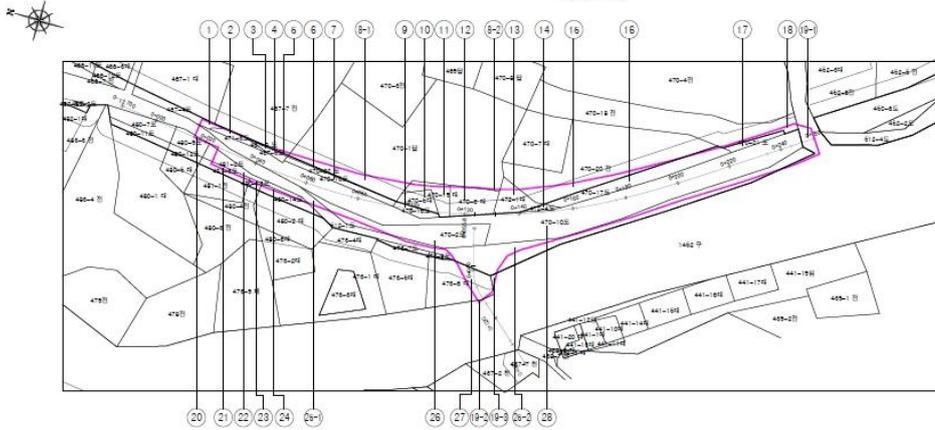
국도31호선(내면 자운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편입토지조서

○국도31호선(내면 자운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계						273,70	4,328			
1	내면	자운리	467-4		도로	66	9	국 (국토해양부)		
2	내면	자운리	471-3		도로	30	29	국 (국토해양부)		
3	내면	자운리	467-5		도로	20	20	국 (국토해양부)		
4	내면	자운리	467-8		도로	7	5	국 (국토교통부)		
5	내면	자운리	467-7	467-11	전	4,629	8	김*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운두령로	
7	내면	자운리	470-15		도로	46	46	국 (국토해양부)		
8	내면	자운리	470-1	470-29	답	2,445	185	김*기	강원도 홍천군 내면 운두령로	
				470-30			7			
9	내면	자운리	470-16		도로	33	33	국 (건설교통부)		
10	내면	자운리	470-5		대	96	96	박*옥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	내면	자운리	470-19		대	99	99	성*애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125	
12	내면	자운리	470-6		대	182	182	성*애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125	
13	내면	자운리	472-1	472-5	대	136	115	부*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운두령로	
14	내면	자운리	472-4		도로	10	10	국 (국토해양부)		
15	내면	자운리	470-20	470-32	전	1,090	180	김*기	강원도 홍천군 내면 운두령로	
16	내면	자운리	470-17		도로	301	296	국 (국토해양부)		
17	내면	자운리	470-21		도로	43	43	국 (건설교통부)		
18	내면	자운리	470-18	470-31	전	845	47	전*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9-1	내면	자운리	1452		구거	256,676	55	국 (국토해양부)		
19-2	내면	자운리					1			
19-3	내면	자운리					6			

20	내면	자운리	480-9				2			등기 미필
21	내면	자운리	481-3		도로	53	14	국 (국토해양부)		
22	내면	자운리	481-2		도로	99	79	홍천군		
23	내면	자운리	480-13		도로	13	4	국 (국토해양부)		
24	내면	자운리	480-14				8			등기 미필
25-1	내면	자운리	512-1		도로	4,326	186	국 (건설교통부)		
25-2	내면	자운리					381			
26	내면	자운리	470-2		도로	377	346	국 (건설교통부)		
27	내면	자운리	473-6		대	337	92	홍천군		
28	내면	자운리	470-10		도로	1,744	1,744	홍천군		

편입용지도

SCALE=1:600



편입도지표서

(단위:㎡)

번호	종이명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재지	비고
1	계몽리	487-4	도로	88	8	이(의)농지(농지)	
2	-	471-5	도로	85	28	이(의)농지(농지)	
3	-	487-5	도로	22	22	이(의)농지(농지)	
4	-	487-4	도로	77	8	이(의)농지(농지)	
5	-	487-7	지	4,828	4	농지(내면)농지	
6	-	475-22	도로	11	11	이(의)농지(농지)	
7	-	475-1	도로	48	48	이(의)농지(농지)	
8-1	-	475-1	지	2,445	172	농지(내면)농지	
8-2	-	475-1	도로	83	3	이(의)농지(농지)	
9	-	475-8	도로	88	88	이(의)농지(농지)	
10	-	475-8	지	88	88	농지(내면)농지	
11	-	475-8	지	88	88	농지(내면)농지	
12	-	475-8	지	182	178	농지(내면)농지	
13	-	475-1	지	188	117	농지(내면)농지	
14	-	475-4	도로	12	12	이(의)농지(농지)	
15	-	475-22	지	1,282	182	농지(내면)농지	
16	-	475-17	도로	81	288	이(의)농지(농지)	

(단위:㎡)

번호	종이명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재지	비고
17	계몽리	475-21	도로	45	48	이(의)농지(농지)	
18	-	475-8	지	848	81	농지(내면)농지(농지) 188-1-1(농지)농지(농지) 188-1-2(농지)농지(농지)	
18-1	-	1482	지	258,878	88	이(의)농지(농지)	
18-2	-	482-8	도로	1	1	이(의)농지(농지)	
18-3	-	482-8	도로	1	1	이(의)농지(농지)	
19	-	481-2	도로	82	14	이(의)농지(농지)	
20	-	481-2	도로	88	78	농지(내면)농지	
21	-	482-1	도로	12	4	이(의)농지(농지)	
22	-	482-1	도로	12	4	이(의)농지(농지)	
23	-	482-1	도로	12	4	이(의)농지(농지)	
24	-	482-1	도로	12	4	이(의)농지(농지)	
25-1	-	812-1	도로	4,528	184	이(의)농지(농지)	
25-2	-	812-1	도로	4,528	184	이(의)농지(농지)	
26	-	475-2	도로	877	848	이(의)농지(농지)	
27	-	475-8	지	887	82	농지(내면)농지	
28	-	475-15	도로	1,744	1,744	농지(내면)농지	
계				275,714	4,287		

**국도31호선(내면 자운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업명	국도31호선(내면 자운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장 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홍천군 공고 제2021-1006호

##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4-6, 4-8
3. 도로길이 : 14m
4. 도로너비 : 5.0m
5. 도로면적 : 6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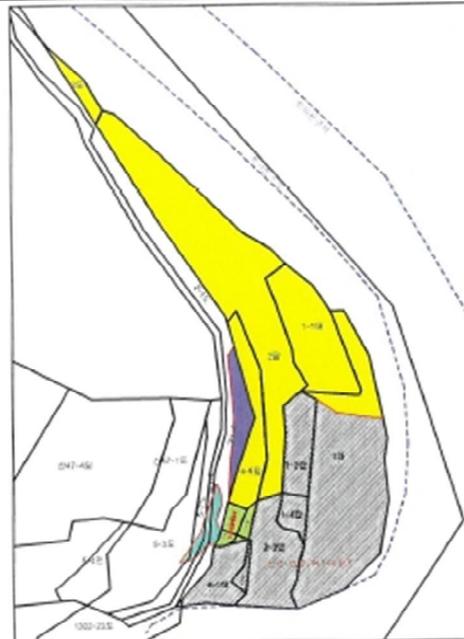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팔봉리	4-6	대	20	20	최*희	
	4-8	답	47	47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도

축적 <입의>



위치도

구 적 표 (개발행위허가)

시번	지목	지적면적	구 입 면 적		제외면적	통도구분	비 고
			부 지	도 로			
1	대	1,565	265	-	265	1,301	보전관리
1-1	대	602	602	-	602	-	보전관리
2	답	1,693	1,693	-	1,693	-	보전관리
3	도	92	92	-	92	-	보전관리
4-5	답	348	348	-	348	-	보전관리
4-6	대	20	-	20	20	-	보전관리
4-8	답	47	-	47	47	-	보전관리
소 계		4,968	3,000	67	3,067	1,301	

축적 [ V ] 1/1,800 , [ ] 1/2,400

홍천군 공고 제2021-1007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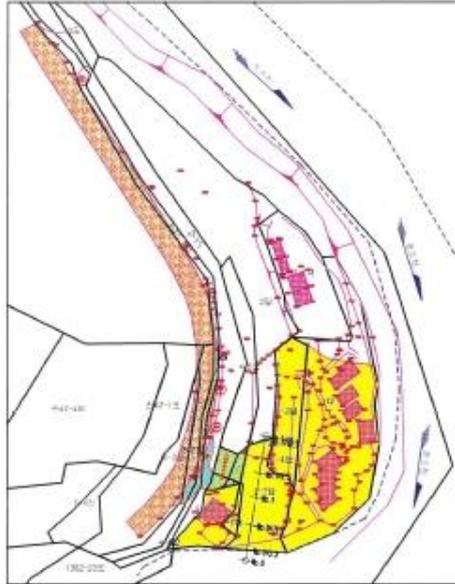
2021년 5월 17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4-7, 4-9
3. 도로길이 : 16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38㎡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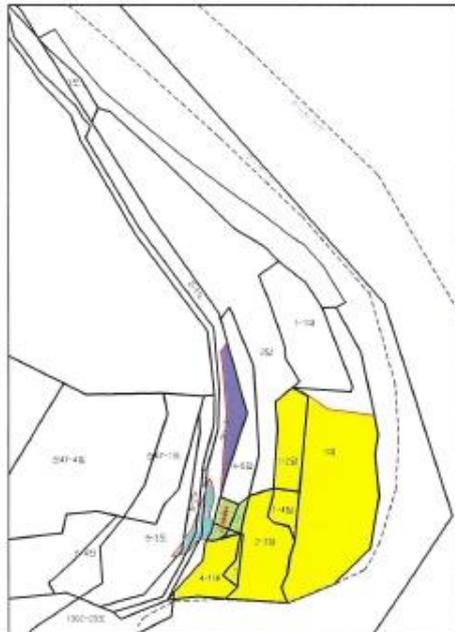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팔봉리	4-7	대	6	6	최*희	
	4-9	답	32	32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도

주소 <임의>



위치도

**구 적 표 (개발행위허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권 입 권 적		제외면적	용도구분	비 고
			부 지	도 료			
1	대	1,566	1,301	-	1,301	265	보전관리
1-2	담	272	272	-	272	-	보전관리
1-4	담	99	99	-	99	-	보전관리
2-3	담	453	453	-	453	-	보전관리
2-2	대	35	35	-	35	-	보전관리
4-1	대	239	239	-	239	-	보전관리
4-7	대	6	-	6	6	-	보전관리
4-8	담	32	-	32	32	-	보전관리
수 계		2,702	2,399	30	2,437	265	

축척 [ V ] 1/1,800 , [ ] 1/2,400

홍천군 공고 제2021-1008호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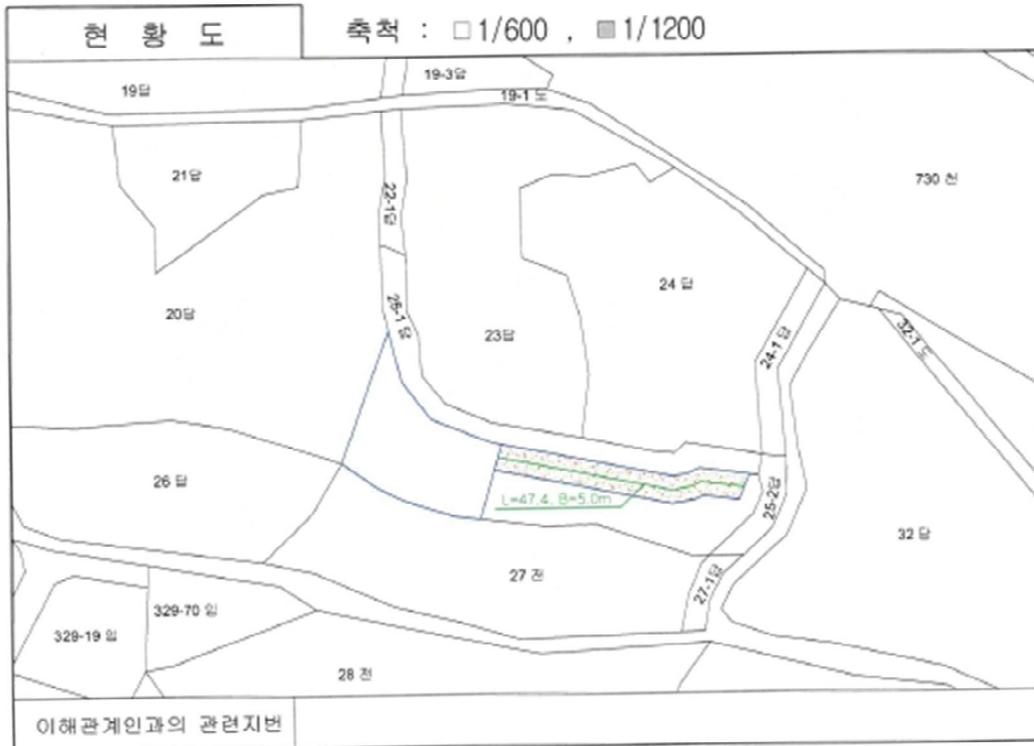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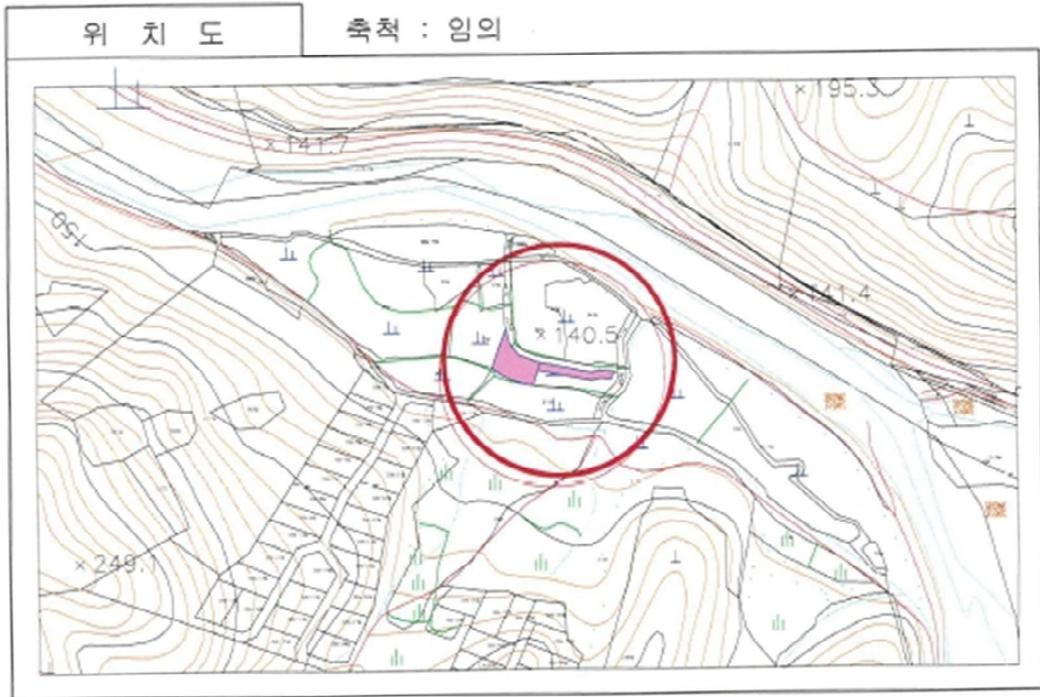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20
3. 도로길이 : 47.4m
4. 도로너비 : 5.0m
5. 도로면적 : 23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남면 명동리	20	답	8,715	235	박*숙 조*희	



홍천군 공고 제2021-1013호

## 개발행위허가 및 기준공지에 대한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기준공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 및 기준공지의 도로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843 외 1
3. 도로길이 : 41.25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16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남면 화전리	843	전	2,284	116	박*춘	
	846-1	대	291	49		



홍천군 공고 제2021-103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서면202호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사업인정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0.

홍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위 치

- 홍천군 서면 동막리, 길곡리 일원

나. 면 적

- 지정 : 8,500㎡(1개 지구)

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조서

지 구 명	위 치	지정내용				비 고
		유 형	등 급	면적(㎡)	지정사유	
서면202호선	홍천군 서면 동막리, 길곡리 일원	붕괴위험	다	8,500	집중호우 및 천둥, 번개, 낙뢰에 의한 도로 사면 붕괴위험지역	2010.06.08. (고시일)

2. 사 업 명 : 서면202호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 사 업 량 : 터널개설 L=138m, B=10m, 도로선형개량 L=757m, B=8.5m

4. 사업기간 : 2020. 2. ~ 2021. 2.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에 비치)

6.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21. 5. 20 . ~ 2021. 6. 3.(14일간)

7. 열람장소 :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033-430-29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033-430-2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